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75

발의연월일: 2022. 7. 21.

발 의 자:서삼석・김원이・김진표

위성곤 • 전용기 • 신정훈

홍기원 · 안규백 · 오영환

장경태ㆍ허 영ㆍ신현영

윤재갑 • 김승원 • 유정주

강민정 • 윤영덕 • 황운하

김철민 · 소병철 · 민형배

김선교 • 이원택 • 박 정

임호선 · 임종성 · 최기상

노웅래 • 백혜런 • 최인호

김영주 • 어기구 • 이개호

의원(3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독성농약 '메틸브로마이드(MB)'는 오존층파괴물질로 농림축산검역 본부에서 작업자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정도로 그 위험성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

현행 법령은 해당 농약의 사용·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농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

경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농림축산식품부 는 이러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함.

뿐만 아니라 이전 등록 시에 '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'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등록 시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를 최초 등록한 1980년대에 제출했던 시험성적서의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재등록 심사 시 계속해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품목등록을 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,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할때 이미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며,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가축 등을 농약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14조).
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품목등록 당시 제출하였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"를 "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9조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14조제2항제1호 중 "제8호까지"를 "제8호까지(제4호는 제외한다)"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 ·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(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)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14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제2항 후단"을 "제3항"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(종전의 제7항)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	제11조(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
재등록) ①·② (생 략)	재등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	3
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	
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	
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	
면제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<u>다만, 품목등록 당</u>
	시 제출하였던 시험성적서의 내
	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
	제출을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
	<u>다.</u>
제14조(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	제14조(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
취소 등) ① (생 략)	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	②
한 농약을 그 등록신청서에 적	
힌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된다고 판단하면 <u>대통령령으</u>	
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심의절차	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
를 거쳐 그 품목의 등록사항을	로 정하는 심의절차
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	
그 제조・수출입 또는 공급을	

제한하는 처분(이하 "제한처분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 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(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)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- 제9조제3항제2호부터 <u>제8호</u>
 <u>까지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
- 2. (생 략) <신 설>

③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·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 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 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품목 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은 해

<u><</u> 후단 삭
제> 다만, 제9조제3항제4호에
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
거쳐야 한다.
1 <u>제8호</u>
까지(제4호는 제외한다)
2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제한처분을
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
조업자 ·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
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(이미
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)을 회 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
있다.
<u> </u>
<u> </u>
제3항
<u>~1 U_6</u>

당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농약의 회수 •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 촌진흥청장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를 명받은 농약에 대하여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, 수입업 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 수 농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.
- ⑥ (생략)
-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이나 제6항에 따라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등 록을 한 제조업자에게 제10조 에 따른 품목등록증을 재발급 하여야 한다.

⑧ (생 략)

<신 설>

<u>⑤</u> 제4항
⑥제3항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<u>®</u>
제7항
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─ ⑩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
라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

한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